
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2520호
----------	--------

2020. 10. 20.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0. 10. 07. 최재란, 유영주 의원  
공동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0. 10. 8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  
회

2020. 10. 20. 상정 ·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유영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, 사회 참여  
및 진입

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 
고립청년을

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실태조사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8조).
- 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).
-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).

### 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**

-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입니다.

#### **○ 주요내용**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.

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.

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안 제7조에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안 제8조에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

는 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## ○ 법령검토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청년기본법」제3조(정의)제1호와 동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제1항 “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” 및 제3항 “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”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.
-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법에 맞춘 조례안입니다.

## ○ 문제점

- 조례안 제정과 관련,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 ○ 종합의견

- 서울시는 이미 2020년 4억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고립·은둔 청년 400명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양천구에서도 지난 8월 27일 목동종합사회복지관, 무중력센터 양천 등 지역사회 14개 복지기관과 청년단체가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는 비대면 네트워크 협약 식을 체결하였습니다.
- 또한,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무중력지대 양천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심리적·장기미취업 어려움을 겪는 양천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‘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’을 2020년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상위법에 근거하고,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보고 드립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)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